

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6 - 90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14호(2009.06.04)호로 정비구역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2-67(2012.05.17)호로 정비구역지정 변경(경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2-102(2012.07.19)호로 정비구역지정 변경(경미한변경)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5-93(2015.06.04)호로 정비구역지정 변경(경미한변경)된 성북구 삼선동2가 296번지 일대 삼선제5구역에 대하여,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 처리하고, 같은 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2016년 7월 일

성 북 구 청 장

삼선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(안)

1. 사업의 종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사업의 명칭 : 삼선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
3. 위치 및 면적 : 성북구 삼선동2가 296번지 일대(63,780.5㎡)
4. 사업시행자 :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이종길)
[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10길6 지층(동소문동3가)]
5. 정비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4개월
6. 사업시행인가일 : 2016년 7월 14일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: 별첨

8. 건축계획

획지구분		건축 면적(m²)	연면적 (m²)	건폐율 (%)	용적률 (%)	층수 (층)	규모별 세대수(전용면적)		
명칭	대지 면적(m²)						전용 면적(m²)	세대수 (분양/임대)	비율 (%)
계	63,780.5	11,675.19	173,593.52	25.38	229.47			1,199	100
택지1	23,891.2	5,919.43	87,124.58	24.78	225.71	10동 4/18	59.84 59.92 59.95	229(분양) 147(분양) 274(분양)	51.8 0
택지2	9,534.4	2,168.69	37,332.85	22.75	241.06	4동 3/18	84.98	196(분양)	22.1 6
택지3	12,578.5	3,587.07	49,136.09	28.52	227.81	5동 4/17	39.38 46.93 59.84 84.98	115(임대) 89(임대) 71(분양) 78(분양)	26.0 5
택지4	1,689.4	삼선동2가 360일대				해당용도지역에 부합한 용도·용적률·건폐율·높이 적용			
택지5	453.3	삼선동3가 90-23일대							
택지6	713.6	삼선동1가 274-54일대							
택지7	279.0	삼선동2가 302-5일대							

9. 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

정비 기 반 시 설	용 도 폐 지 정비기반시설		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			
	종류	규모 (m ²)	종 류	규모 (m ²)	시 행 자	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
	도로	10,567.10	도 로	9,687.10	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	시행자 설치 후 기부채납
	전	208.00	어린이 공원	3,348.60	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	시행자 설치 후 기부채납
	합 계	10,775.10	합 계	13,035.70	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	시행자 설치 후 기부채납

10. 관계도서 : 성북구청 주거정비과(☎02-2241-2862)에 비치

인 사

《발령 제 150 호》

연번	성 명	발 령 내 용	현 직	
			소 속	직 급
1	박 맹 규	구 의 회 사 무 국 근 무 를 명 함	석 관 동	지 방 운 전 주 사 보
2	류 청 담	석 관 동 근 무 를 명 함	구 사 의 회 사 무 국	지 방 운 전 서 기 보

2016. 07. 12.자.

